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8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69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설치하는 급수장”을 “설치하는 급수장치”로 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번지내”를 “도로명주소 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은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2026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제 수 수 료 표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4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별표 6]

과 태 료 및 행 정 처 분 기 준 (제47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부정급수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 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동방해 ,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40,000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6. 시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 할 때까지 징수처분
7. 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중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징수 처분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 위반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9. 업종위반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업종직권 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별지 제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감면 해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 용 가	수용가번호 (관리번호)			업 종	
	주 소			가 구 수	
	성 명			전화번호	
감 면 대상자	사 유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 <input type="checkbox"/>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여 수 시 장 귀하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자녀가구·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감면 해지신청시) 해지 증명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u>설치하는 급수장</u></p> <p>2. 3. (생략)</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생략)</p> <p>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제43조제3항</u>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p> <p>7. (생략)</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 (생략)</p> <p>⑥동일 건물 또는 동일 <u>번지내</u>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p>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 -----.</p> <p>1. ----- ----- <u>설치</u> <u>하는 급수장치</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44조제3항</u>----- ----- -----</p> <p>7. (현행과 같음)</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도로명</u> <u>주소 내</u>----- ----- ----- -----.</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1. 2. (현행과 같음)

3.-----

----- 2명 -----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
의 요금을 면제한다.

4. ~ 7. (생략)

②·③ (생략)

제44조(급수정지처분) ① ~ ③
(생략)

<신설>

-----.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급수정지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야 한다.